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일자 : 2017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은 “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변경(안 제2조)
- 현행법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변경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수집운반 대상 변경(안 제4조제2항)
-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사육두수 5,000두 미만(사육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인 관할 지역 내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

○ “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조항 삭제(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해당 없음 [기획감사실-7846(‘17. 8.30.)]
라. 성별영향평가분석 : 개선사항 없음 [주민복지과-49662(‘17. 9. 7.)]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 (예고기간 : ‘17. 9.21. ~ ‘17.10.11.)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에 따라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

제2조제4호 중 “축사(먹이방, 분만실을 포함한다)·착유실 및 운동장으로 한다”를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방목지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정화처리하는 시설”을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이하“군수”라한다)가 설치한 시설로써”를 “(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 법 제28조1항의 규정”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으로, “영업 (가축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하고”를 “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고”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관리 운영”을 “관리·운영”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을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사육두수 5,000두 미만(사육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인 관할 지역 내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부득이한 상황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

제4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저장액비조 설치권장)”을 “(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신고대상미만 농가에 대하여 저장액비조 및 축분 보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를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축산농가가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수집운반)”을 “(수집·운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을 “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오염”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으로,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수집운반대행)”을 “(수집·운반의 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가축분뇨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을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으로, “자로 하여금”을 “자에게 가축분뇨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뇨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41조”를 “「하수도법」 제41조”로, “영업자로 하여금”을 “영업자에게 분뇨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신청·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심사한 후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7조제4항 중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를 “가축 분뇨 수집·운반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를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일지에”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을 “작성·비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을 “매월 다음 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처리시설사용료”를 “처리시설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6호”를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교부하고”를 “발급하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7조의

규정”을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를 “각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이행하지아니하는”을 “이행하지 아니하는”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류하는자 등을 발견할때”를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경우”로 한다.

제12조 중 “아니 하는 등 관계법령”을 “않는 등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계약 관련 사항의 이행여부

제13조제2호 중 “수집·운반”을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 분뇨 및 가축분뇨”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7조제3항 관련)

<table>
<tr><td colspan="6">□ 신 청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신청)서
□ 변 경</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①상 호(성명)</td><td colspan="4"></td></tr>
<tr><td>②성 명(대표자)</td><td></td><td>③ 생년월일</td><td colspan="2"></td></tr>
<tr><td>④주 소</td><td colspan="4">(전화번호:)</td></tr>
<tr><td colspan="2">⑤ 사 업 장 소 재 지</td><td colspan="4">(사 무 실 면 적 :)
(전화 번호:)</td></tr>
<tr><td colspan="2">⑥ 대 행 신 청 기 간</td><td colspan="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 colspan="2">⑦ 기술인력 확보계획</td><td>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2인이상</td><td>운 전 원: 명
일반인부: 명</td><td>⑧ 흡입식차량
1대이상
(용량 3,600ℓ이상)</td><td>톤 대</td></tr>
<tr><td colspan="2">⑨ 축 산 폐 수 관 련 대 행 의 종 류</td><td colspan="4">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td></tr>
<tr><td colspan="6">「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 신 청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을 합니다.
□ 변 경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주군수 귀하</td></tr>
<tr><td colspan="6">※ 구비서류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변경신청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대행업 지정서 1부</td></tr>
</table>

【별지 제2호서식】 (제7조제3항 관련)

<table>
<tr><td colspan="5">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td></tr>
<tr><td rowspan="3">신청인</td><td>①상 호(성명)</td><td colspan="3"></td></tr>
<tr><td>②성 명(대표자)</td><td></td><td>③ 생년월일</td><td></td></tr>
<tr><td>⑤사업장소재지</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 colspan="2">⑥ 대 행 신 청 기 간</td><td colspan="3">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td></tr>
<tr><td colspan="2">⑦ 대 행 업 의 종 류</td><td colspan="3">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td></tr>
<tr><td colspan="2">⑧ 준 수 사 항</td><td colspan="3">- 「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 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한다.</td></tr>
<tr><td colspan="5">「성주군 분뇨·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합니다.

년 월 일

성 주 군 수</td></tr>
</table>

변경사항 뒷면

일 자	내 용	확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 26조 및 「하수도법」 제41조에 의거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및 처리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에 따라 성주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메추리・개를 말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먹이방, 분만실을 포함한다)・착유실 및 운동장으로 한다.	4. ----------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방목지를 말한다.
5.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

6. “공공처리시설”이란 성주군수(이하”군수”라한다)가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로 ----------.
7. “대행업자”란 법 제28조1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 (가축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영업(가축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고 ----------.
제3조(관리·운영) ① (생 략)	제3조(관리·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운영----------범위----------.
③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4호서식----------.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생략)	제4조(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신고대상 및 규모미만의 축산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는 사육두수 5,000두 미만(사육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인 관할 지역 내 가축사육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되,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우선적 처리	3. 부득이한 상황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
④ 제2항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거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부득이 적정처리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되어 위탁처리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허가대상 축산 농가의 가축 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저장액비조 설치권장) 군수는 신고대상미만 농가에 대하여 저장액비조 및 축분 보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5조(가축분뇨 저장시설의 설치) ① --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축산농가에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신 설>	② 군수는 축산농가가 저장시설 및 분뇨 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수집운반) 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6조(수집·운반) ① --- 지역 ----------.
② 환경오염으로 인한 긴급상황이 발생하여 수집·운반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 우선적----------.
제7조(수집운반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집·운반의 대행) ① --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 자에게 가축분뇨의 ----------.
② 군수는 분뇨에 대하여 「하수도법」 제41조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영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 「하수도법」 제41조---------- 영업자에게 분뇨의 ----------.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가축 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신청·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심사한 후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실적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수집·운반 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가축 분뇨 수집·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일지에 ---------- 작성·비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 매월 다음 달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군수는 수거구역, 수거량 및 업체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수를 조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① ---------- 처리시설 사용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 제1항에 따라 ---------- 범위---------.

⑤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에 의해 징수하고 별지 제6호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⑤ ----------별지 제6호서식---------- 발급하고----------.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한 분뇨 및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각 호----------.
1.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대행업자	1. 제7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공공처리시설에 분뇨 및 가축분뇨를 반입한 다음날까지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 할때마다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반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 각 호----------.

④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 또는 수탁관리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수탁관리자의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 이행하지 아니하는 ----------.
제10조(포탈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 등으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포탈하였을때는 포탈된 금액의 3배를 일시에 부과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 경우----------.
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자 등을 발견할때에는 신고 할 의무를 가진다.	② ----------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군수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는 등 관계법령 및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제한) ---------- 않는 등 관계 법령 ----------.
제13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집.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3조(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 및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1. 계약 관련 사항의 이행여부
2. 수집·운반의 적정성	2. 분뇨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
3. 기타 수집·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뇨 및 가축분뇨 -------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